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13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년 9월 23일

나. 제안자: 송순호 의원 외 7명

다. 회부일자: 2021년 9월 30일

라. 상정일자: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1.10.13.)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송순호 의원)

가. 제안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2) 위기대응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안 제4조, 제5조)

- 3)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과 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 (안 제6조~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해당부서: 건강관리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1. 9. 24. ~ 9. 29.)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허은옥)

가. 개정취지

-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신속하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는 용어 정의로
 - “정신질환자”, “응급정신질환자”,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등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따랐음

- 응급정신질환자: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
-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
- ※ 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정의는 상위법의 정의를 따름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4조와 제5조는 위기대응 협의체에 관한 것으로

- 협의체의 기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구축 및 역할 분담,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이며,
- 협의체의 구성은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 강서구의회, 강서경찰서, 강서소방서,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장애인 인권 단체 등의 추천자로 구성되며, 강서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담당 팀장은 협의체 간사로 소관 사무를 처리하게 됨
 -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안 제6조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7조는 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으로
 -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이를 위해 상위법령에 따라¹⁾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8조와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
 -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비용, 심리평가, 개인상담 등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래 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를 받도록 정신질환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 및 그 보호의무자와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및 외래치료 지원을 하게 될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료를 중단한 때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 구급대원에게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철회하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1조에 따라 자의 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2. 제42조에 따라 동의 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3. 보호의무자에게 제43조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을 요청하는 것
4.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하게 하는 것(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절차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의 집행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종합의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 그 밖에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 입원 및 응급입원, 정신의료기관의 지정과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서울시 정신건강통계에 따르면 강서구 등록 정신장애인은 서울시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0.29% 임 (서울시 평균 0.17%, 2020년 12월 현재 기준)
 - 강서구에서는 응급정신질환자와 관련하여 2020년 44건, 2021년 9월 현재 33건의 응급입원 사례가 있었으며, 응급입원환자 발생 시 즉시 입원이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지 못해 대처가 늦어지는 사례가 있었음
 - 최근 국회의 자료에 따르면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해서 2019년 경찰이 응급입원을 요청한 총 7,591건 가운데 의료기관이 거부한 사례는 214건으로 거부 비율이 2.8%였으나
 - 2020년에는 5,431건 중 382건(7.0%)으로, 올해(1월~6월)에는 3,992건 중 316건(7.9%)으로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거부율이 2.8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조례는 이와 같은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 관내 경찰서, 소방서,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정신

- 의료기관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필요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입원 등에 필요한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제정의 입법취지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의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구청장의 책무 및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구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강행규정으로 문구 수정
- 위촉 가능한 협의체 위원의 범위를 수정

나. 수정내용

- (제3조제1항)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 (제3조제2항)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 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정책을 발굴하여 야 한다.’ 로 수정함
 - (제4조)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에서 ‘구성하여 야 한다.’ 로 수정함
 - (제5조제3항)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기관 및 단체 중
 - 제6호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에서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로 수정함
 - 제7호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 인권 단체에서 복지 기관 단체로 수정함

붙임 1)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2) 관계법령 1부.

〈 수정안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을 “정책을 발굴”로 한다.

제4조 중 “구성할 수 있다”를 “구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
7. 복지 기관 단체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책무) ① ----- ----- ----- ----- ----- ----- ----- 하여야 ----- -.</p> <p>② ----- ----- 정책을 발굴-----.</p>
<p>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p>	<p>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 ----- ----- ----- ----- 구성하여야 한다.</p>
<p>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p>	<p>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p>

② (생략)

③ 강서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 5. (생략)

6.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7.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 인권 단체

8.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

7. 복지 기관 단체

8. (현행과 같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

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

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

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학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학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학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학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과 지정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